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담당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규정 도입〉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76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9.
3. 회 부 일 : 2025.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란 근본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불만을 가진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처럼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¹⁾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²⁾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2(소송 지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설치되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절차 및 감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과 관련하여 감사담당자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지원·보장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현재 별도의 소송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³⁾ 및 「소방기본법」⁴⁾의 경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물의 손괴나 신체의 침해와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라 할 것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⁵⁾의 경우 교원 등에 대해 빈번하게 적용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될 수 있는 개별 처벌조항(「아동학대처벌법」⁶⁾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⁷⁾(국가공무원)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⁸⁾(지방공무원) 또는 내부규정(공공기관)⁹⁾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또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8)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예를 들어, 「법률사무처리 규정 (인천공항공사 내부규정)」 제24조(지원대상) 소송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소송 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통상의 공사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활동과정 중 당해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법률사무 심의회가 인정한 사건·사고를 의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로 인해 형사 입건되어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후, 법원의 무죄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소송 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후, 소송비용 또는 판결금을 납입하여야 하거나 납입한 경우

3. 소송 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벌금, 과료, 과태료에 관한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 개정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인 감사원은 “의견없음”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5